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6.

발 의 자 : 송기헌 · 백혜련 · 김남국  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  
박주민 · 소병철 · 신동근  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5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법경찰리(이하 “사법경찰리”라  
한다)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⑤ (생략)
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